

# 대법원 2024도119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제공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투약하기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② 피고인 1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소지·사용·투약하고, 대마를 수수·제공하고, ③ 피고인 2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sup>1)</sup>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향정신성의약품 중 합성마약 관련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1975 판결)

## 1. 공소사실의 요지

###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2023. 8. 26. 늦은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플루오르-2-옥소 피시이, 4-메틸메스케치논<sup>2)</sup>, 엑스터시, 케타민<sup>3)</sup>을 그 자리에

1) 이하 ‘마약류관리법’

2) 이하 ‘이 사건 합성마약’

3) ① 이 사건 합성마약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정한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이고, ② 엑스터시와 케타민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에서 정한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로 모두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함

있던 여러 사람들에게 수수·제공하고, 이를 사용·투약하기 위한 장소를 제공함

#### 나. 피고인 1의 단독범행

- ▣ 피고인 1은 2023. 8. 13. 이 사건 합성마약, 엑스터시, 케타민을 매수하고, 대마를 수수한 뒤, 이를 각 소지함
- ▣ 피고인 1은 2023. 8. 26. 공동범행 장소에서 이 사건 합성마약, 엑스터시, 케타민을 사용 또는 투약하고, 피고인 2에게 대마를 제공함

#### 다. 피고인 2의 단독범행

- ▣ 피고인 2는 2023. 8. 26. 공동범행 장소에서 이 사건 합성마약, 엑스터시, 케타민을 사용 또는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함

## 2. 소송경과

### 가. 제1심 ⇨ 전부 유죄

- ▣ 피고인 1 ⇒ 징역 5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40만 원, 추징 76만 원
- ▣ 피고인 2 ⇒ 징역 4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추징 76만 원

### 나. 원심 ⇨ 일부 무죄

- ▣ 이 사건 합성마약 관련 매수, 소지, 수수, 사용, 장소제공 부분 주문 또는 이유 무죄
  - 피고인들이 취급한 마약류에 이 사건 합성마약이 섞여 있었다는 점과 그에 대한 피고인들의 미필적 인식과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 나머지 부분 유죄
  - 피고인 1 ⇒ 징역 4년 6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추징 76만 원

- 피고인 2 ⇒ 징역 3년 6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추징 76만 원

### 3. 대법원의 판단

#### 가. 쟁점

- ▣ 이 사건 합성마약에 대한 피고인들의 인식 및 고의 인정 여부
- ▣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관한 당부

#### 나. 판결 결과

- ▣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원심 수긍)

#### 다. 판단 내용

- ▣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주문 무죄 및 이유 무죄 부분)
  - 원심의 이 사건 합성마약 관련 부분 무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 ▣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유죄 부분)
  - 원심의 나머지 부분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